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동의학원 (동의과학대학교)의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동의학원 (동의과학대학교)의 재산상황 · 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 · 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지적사항 없음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지적사항 없음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지적사항 없음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해당 없음		해당 없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동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동의과학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 ·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7년 4월 14일

학교법인 동 의 학 원

감 사 김형태 (인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715 호)

감 사 김인우 (인)

*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7년 4월 14일

학교법인 동 의 학 원

이 사 장 김 인 도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17년 4월 14일

동 의 과학 대 학 교

총 장 김 영 도 (인)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학교법인 동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.	지적사항은 없습니다.
피감사기관장 <u>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 김 인 도</u> 직인	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동의과학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6년 3월 1일 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회계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.	지적사항은 없습니다.
피감사기관장 <u>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 영 도</u> 직인	

(교비회계)

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이사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16회계년도 (2016년 3월 1부터
2017년 2월 28까지)

<붙임>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 서식)의 피감사자(임회인)서명
날인은 법인 : 사무국장, 대학교 : 재무처장, 부속병
원: 경리부장등 제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
(법인 · 이사장, 대학교 · 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 후 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
1호)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
232:2003.2.25) 별지 제1의1호 및 2호 서식을 붙임으로
같음함.

학교법인 동의학원
동의과학대학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의학원의 2016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,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동의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동의학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7년 4월 14일

학교법인 동의학원

감 사 김형태 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715호)

감 사 김영우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기락정

성 명 김준희

*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과학대학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7. 4. 14.

학교법인 동의학원

감 사 김경태 인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715호)

감 사 김은우 인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 무 처 장

성 명 김 석 호 인

*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